

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(제11조 관련)

1. 교통수단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·농어촌버스운송사업·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
-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(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한다)
- 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
- 바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
2. 여객시설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- 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
- 다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(驛舍)
- 라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
- 마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(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,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한다)
- 바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- 사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(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
- 아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3)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
- 자. 광역철도의 역사

3. 도로

- 가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)
- 나. 「도로법」 제108조에 따라 「도로법」이 준용되는 도로